

시사자료·제60호

# 통 일 교 육

통 일 연 수 원



**북한동향**

■ **대내동향**

- '94년도 김일성 신년사 분석 ..... 7
-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개최 ..... 14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최 ..... 24
- 대외경제위, 무역확대 방침 표명 ..... 29
- 합영법 개정 ..... 33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정 ..... 36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발표 ..... 39

■ **대남동향**

- '94년도 대남 투쟁방향 제시 ..... 47
- '94년도 대남 노동운동 방향 제시 ..... 51

■ **대외동향**

- 『자유아시아방송』법안 통과(미국) 관련, 비난 ..... 57
-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방중 ..... 60
-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 방북 ..... 63

---

## 자 료

- 북한 「개정 합영법」 전문..... 69
- 북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전문..... 77
- 북한 「외국투자은행법」 전문 ..... 87
-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전문.....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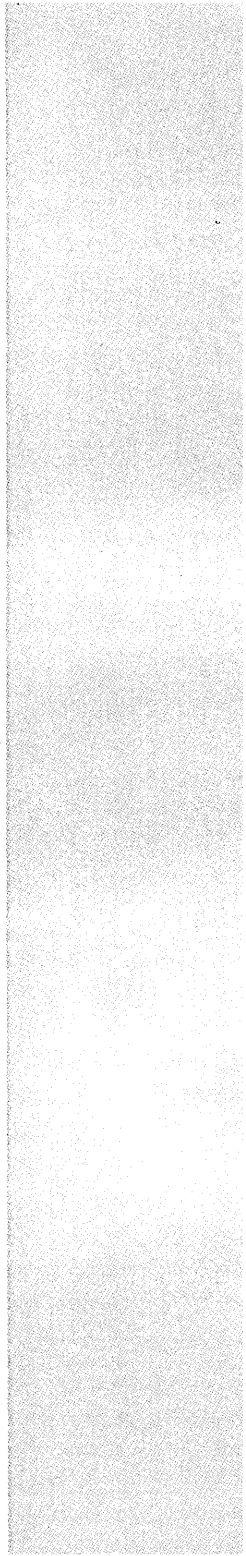
## 특 집

-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문 ..... 99

### ■ 북한일지

### ■ 통일교육전문위원회 동정

공  
안  
부  
회





# 대내동향

---

- '94년도 김일성 신년사 분석
-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개최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최
  - 대외경제위, 무역확대 방침 표명
  - 합영법 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정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발표





## '94년도 김일성 신년사 분석

### 개 요

- 북한은 김일성이 구랍 31일 『금수산의사당』에서 열린 당 중앙위·중앙인민위·정무원 연합회의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1월 1일 오전 9시에 녹음실황으로 보도하였음.
- ※ 신년사 소요시간은 약 26분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90년 42분, ’91년 50분, ’92년 37분, ’93년 25분)

### < 신년사 요지 >

#### 【전반적 정세 평가】

-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졌음.
-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벌리고 있지만 자주·독립·사회주의에로의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역사의 흐름을 돌려 세울 수 없음.

#### 【경제면】

- 앞으로 3년 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

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함.
-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이것이 우리 인민들의 전투적 구호임.

**【군사면】**

- 어떠한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준비와 군사적 준비, 물질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음.

**【통일·대남면】**

-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10대 강령, 특사교환 제안들을 외면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 의존의 길로, 민족 단합이 아니라 북남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
- 남조선의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역대 군부독재정권과 다른 것이 없음.
- 우리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임.

**【핵문제】**

-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 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

- 압력이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할 수 없으며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음.

### 【대외면】

-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

## 분 석

### 【전반적 정세 평가】

- '93년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북한 고립·말살 책동이 가장 악랄한 한해였으나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로 이를 잘 막아낸 승리의 한해였다고 자평하였음.
- '94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 는 혁명적 전환의 해라고 전제하고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어 혁명적인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자주·자립·자위의 혁명노선 및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노선 견지
  - 당과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과 자력갱생 강조
- 여전히 사회주의로의 지향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변, 국제사회의 변화를 호도하고 있음.

**【경제면】**

- 지난해와 같이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93.12.8) 결정사항을 반복해서 강조
  - 이는 제시할 만한 구체적인 실적이 없을 정도로 제3차 7개년 계획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며
  -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주민불만 해소와 외화가득이 당면 경제문제 해결의 최우선 목표임을 재확인
- 다만 대외무역부에서 적극적인 대외시장 개척, 대외신용 제고, 수출품목 다양화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수출증대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대외개방의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됨.
- 그러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전투적 구호”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경제개방에 대한 정책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대남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내놓고 남북화해·협력과 특사 교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측이 외세 의존과 대결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다고 우리측에 대화중단의 책임을 전가
- 특히 남측이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고 핵문제를 구실로 “군사적 대응이니 공조체제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협할 국면으로 몰아 넣었다”고 강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

- 연방제 통일방안의 재확인
  -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 입장 불변 표명
- 우리 문민정부 강력 비난
  - 과거 파쇼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고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매도
-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일치단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고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통일전선전술』을 견지하고 있음.

【핵문제】

- “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는 종래 입장 반복
  - 북의 핵개발 의혹 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이는 미국의 반사회주의, 반복한 책동의 산물이라고 되풀이 주장
- “핵문제는 『조·미 회담』으로만 해결” 가능 주장
  - 핵문제는 압력이나 위협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조·미 회담』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군사면】

- 방위력 강화에 역점
  - 불의의 사태시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준비, 군사적 준비, 물질적 준비』 강조
  - 온 사회의 군사 증시 및 『인민군대』 원호 기풍 확립 강조

※작년에 비해 『물질적 준비』와 『군사 증시·군대 원호기풍』을 강조한 것이 특징

### 【대외면】

- 외교면에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 것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 모면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단결방침도 계속 견지

## 종 합 평 가

- 전반적으로 경제부문에 비중을 둔 반면 통일이나 남북대화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불과함.
- 경제부면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 결정 사항인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향후 3년간의 완충기의 전략방침으로 재천명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노선을 표명한 것으로 보임.
- 대남태도면에서 강도높은 비난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함.
- ※ 그러나 신년사가 대남공세적 비난을 통한 북한 주민의 긴장조성을 겨냥한 내부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신년사의 비난과는 다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 해결은 『조·미 회담』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미국이 제네바 공동성명(2단계 회담)의 원칙을 지키면 해결된다고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음.

※ 그러나 북측의 이같은 의도적인 대남무시 태도는

- ① 3단계 미·북 회담 성사를 위한 미·북 실무접촉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 ② 미·북 고위급 접촉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대남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내적으로 온 사회의 군사 중시 풍조와 사상혁명의 관철을 강조한 것은 병영국가체제를 지속시킴으로써 체제 위기 모면을 위한 내부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적들의 전쟁도발책동”, “적들과 침예한 대립”, “사회주의에 대한 고립·말살 음모”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긴장분위기를 조성

(주간 북한동향 제158호)

##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개최

북한은 '93.12.8 김일성 주제로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개편문제, 제3차7개년 경제계획 수행 총화와 당면한 경제건설 방향 문제 등을 다뤘음.

### 조 직 개 편

#### 【개편 내용】

##### <정치국 위원 보선>

- 위 원 : 김영주
- 후보위원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  
홍석형(국가계획위원장)

##### <당 중앙위 위원 보선>

- 위 원(9명)  
김영주(정치국원)  
현철해('92.4 상장, 중앙위 후보위원)  
김리철('92.4 대장, 중앙위 후보위원)  
남상락('92.4 상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인술('92.4 상장, 중앙위 후보위원)  
채희정(예산위 부위원장, 중앙위 후보위원)  
이영철(미상 ※인민군 소장?)  
최성숙('82 농근맹 중앙위 부위원장)  
주성일('93.4 직총 위원장)
- 후보위원(7명)



정창열('85 상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백상호('92.4 중장)

이태철('92.4 중장)

박재경('92.4 중장)

이동춘(건재공업부장)

곽범기(기계공업부장)

박원현(미상)

**【분 석】**

- 당 중앙위는 지난 '80.10 제6차 당대회시에는 145명의 위원 (후보위원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 그동안 여러차례의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위원 197명, 후보위원 153명임.
  - ※ 이 수치는 사망, 탈락자중 북한측이 발표하지 않은 인원도 있어 실제 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 당대회(5년마다 개최)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당의 중추적 기관으로
  - 해당시기 당이 직면한 중요 문제 토의 결정, 당 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선거, 총비서와 비서 선거, 당 중앙위 비서국과 군사위원회 조직 등의 임무를 담당함.
- 이번 당 조직개편의 특징은
  -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정치국 위원이 된 점
  - 새로 보선된 중앙위원 9명이 후보위원에서 승진 4명, 신규 발탁 5명인 점

- 새로 보선된 중앙위원 9명중 5명이, 후보위원 7명중 4명 등 총 9명이 군 출신인 점임.

※ '92.12.10 개최된 제6기 20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시 새로 보선된 당 중앙위원 9명중 3명이, 후보위원 9명중 1명 등 총 4명이 군 출신이었음.

○ 이번 개편은

- 지난 '75년 부총리 및 남북조절위 북측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18년 동안 공식활동이 없었던 김영주를 정치국 위원에 등용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 가족내 갈등요인이 없음을 과시하는 한편

※ 김영주는 지난해 7.26 『전승 40돌』 행사(전승기념탑 제막식)에 나타난 바 있음.

- 군 출신을 대거 등용, 역시 김정일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군부의 지지기반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 등으로 분석됨.

※『공산주의 미풍 선구자대회』참가자 접견시의 북한 권력서열

- '93.12.9 김일성·김정일이 『전국 공산주의 미풍 선구자 대회』 참가자 접견시 배석한 당·정 간부들의 서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정치국 상무위원>

- (1) 김일성      (2) 김정일      (3) 오진우

<정치국 위원>

- (4) 강성산      (5) 이종욱      (6) 박성철      (7) 김영주  
(8) 김영남      (9) 최 광      (10) 계응태      (11) 전병호  
(12) 한성룡      (13) 서윤석

<정치국 후보위원>

- (14) 김철만    (15) 최태복    (16) 최영림    (17) 강희원
- (18) 양형섭    (19) 홍석형    (20) 연형묵

<비서국 비서>

- (21) 김중린    (22) 서관희    (23) 황장엽    (24) 김기남
- (25) 김국태    (26) 김용순

<정무원 부총리>

- (27) 김복신    (28) 김창주    (29) 김윤혁    (30) 김 환
- (31) 장 철

<중앙인민위>

- (32) 전문섭    (33) 윤기복    (34) 박남기

※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던 김용순은 당정치국 후보위원  
에서 탈락되고 당비서직(대남사업)만 보유한 것이 판  
명됨.

(서열 15위→26위로 됨)

**제3차7개년 경제계획 총화 및 당면 경제건설 방향 토의**

**【보고 요지(강성산 총리 보고)】**

<국제환경 급변으로 제3차7개년계획 실패 자인>

- 실패 이유는 세계 사회주의 시장 붕괴로 이들 국가와  
맺었던 장단기 무역협정 중단 등 경제협조와 무역거래  
부진과 T/S훈련 등 새 전쟁 위험 고조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국방력 강화에 전용 불가피
- 당은 경제성장속도를 조절하고 경제규모를 축소하는  
등 정책방향 전환

— 소비재 생산에 주력하면서 중공업 부문인 전력·석탄공업 발전을 추구

○ 공업생산 총액목표, 전력, 강철, 화학섬유 등 일부 중요 계획 지표 미달

<공업부문 실적>

○ 계획기간중 공업생산은 1.5배로 증가하여 연평균 5.6% 성장 이룩

○ 전력생산은 '86년비 1.3배로 증가

—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 등 새로 건설

— 금강산발전소, 영원발전소, 금야강발전소, 12월화력발전소, 해주화력발전소 등 건설 추진

○ 강철생산은 '86년비 1.3배로 증가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2단계 확장공사, 무산광산 능력 확장공사 추진, 단천제련소 조업

— 고압관, 불수강관(스텐레스 강관), 생산기지 새로 조성

○ 기계공업부문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컴퓨터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

— 희천공작기계연합기업소, 4월3일공작기계연합기업소 확장

— 5월18일대형단조공장

○ 화학비료 '86년비 1.5배, 화학섬유 등 생산 증가

—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1단계 공사 완공, 신의주 화학섬유연합기업소 정비 보강

—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 대형화, 현대화 추진

○ 경공업은 지방공업부문의 생산이 '86년비 1.7배로 증가

- 평양방직, 구성방직, 사리원방직, 개성방직 등 설비 현대화 실현
-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전개로 인민소비품 생산 증가

#### <농수산부문 실적>

- 수리화·전기화의 완성
  - 계획기간중 2천여리(800km) 관개수로 건설로 논·밭 관개 체계 전면적 확립
- 기계화수준 전면적 향상
- 화학비료 공급량 '86년비 1.4배 증가 및 살균제, 살초제 공급량 증가
- 수산부문은 3,750톤급 대형 선미트롤선을 비롯한 1,100여척의 어선 건조

#### <교통운수부문 실적>

- 철도 본선 전기화 기본적으로 완성
  - 800km구간 전철화, 북부 내륙선 철도 신설
- 현대적 고속도로건설 및 주요 무역항 화물통과능력 증대
  - 평양-개성, 평양-강동, 원산-금강산 고속도로 완공
  - 홍남항 등 개건확장

#### <기본건설 실적>

- 기간중 수백억원을 투자, 동력기지, 금속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 등 건설 추진
  - 공업부문에서만도 11,000여개 시설을 건설
  - 연산 200만톤 능력의 상원시멘트공장 건설 조업
- 전국 각지에 3,200여개 교육, 문화, 보건시설 건설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3대혁명 전시관, 만경대소

년궁전, 청춘거리 경기관 등 건설

○ 전국적으로 100여만세대 살림집 건설

— 평양시 광복거리, 통일거리에 10여만세대 건설

<주민생활>

○ '93년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9.7명으로 증가

○ 근로자 평균수명 74.5세로 향상

○ 농산물 수매가 대폭 인상 및 장학금 지급 확대

—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장학금을 전반적으로 40%이상 인상

<향후 2-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

○ 변천된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의 완충기 설정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전략방침 제시>

○ 농업 제일주의

— 농촌기술혁명 완성, 영농작업 과학화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제도 공고화로 사회주의 농촌테제 실현

○ 경공업 제일주의

— 경공업 공장 개건·확장, 지방공업 발전, 경공업 원료생산 강화, 섬유제품과 일용품, 식료가공품 증산 및 소비재의 품종과 질의 결정적 제고 등

○ 무역 제일주의

— 수출품 생산기지를 튼튼히 하고 수출품 생산을 확대 강화하며 대외시장을 적극 개척

## 【분 석】

○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87-'93) 수행 총화보고를 통해 일

부 주요 지표의 계획 미달을 언급, 동 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향후 2-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음.

※ 제1차7개년계획('61-'70)이후 계획기간마다 실적 부진으로 1-3년간 연장하거나 조정기를 두었음.

△ 제1차7개년계획('61-'70) 3년, 6개년계획('71-'76) 1년,  
제2차7개년계획('78-'84) 2년

- 동계획 수행실적 부진은 ①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장단기 무역협정 중단으로 인한 경제협조 및 무역의 부진 ②T/S훈련 등 전쟁위험 고조로 경제건설 재원을 국방력 강화에 전용한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였음.
- 동 보고에서 생산실적 통계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공업부문의 성장율만 일부 발표하였으나 당초 목표 성장율에는 크게 미달되었음.
  - 공업총생산은 목표성장율 1.9배(연평균 9.6%)에 비해 실적은 1.5배(연평균 5.6%)에 불과
    - ※ 정부가 평가한 '92년말 주요 공업부문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 계획수행 실적은 부문별로 25-60% 수준이었음.
- 그러나 계획기간중 고속도로, 내륙철도, 관개수로 건설 등 노동집약적인 건설사업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속도로 3개노선(약 282km), 북부철도(약 250km), 관개수로(약 800km)신설
- 또한 철도전기화도 주요 본선의 전철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발표되었음.
  - 기간중 전철화 실적은 총연장 800km

## &lt;공업분야 계획수행 실적&gt;

(1992년 현재)

구 분	목 표	실 적 (평가치)	수행률(%)
전 력	1,000억kwh	247억kwh	24.7
석 탄	12,000만톤	2,920만톤	24.3
철 강	1,000만톤	598만톤	59.8
비 철 금 속	170만톤	49만톤	29.0
화 학 비 료	720만톤	351만톤	48.8
합 성 수 지	50만톤	15만톤	30.0
시 멘 트	2,200만톤	1,202만톤	54.6
직 물	15억m	68백만m	4.5

○ 전국 도시와 농촌 주택건설 실적은 100만세대(그중 평양시 10만세대)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판단됨.  
(계획목표 연간 15-20만세대)

- 평양시의 경우 계획기간중 5만세대가 건설 완료되고 현재 3만세대 건설중

○ 주민보건부문중 인구 1만명당 의사수를 29.7명으로 발표하였으나 당초 계획목표인 43명에는 크게 미달된 것이며, 평균 수명은 74.5세로 밝혔음.

※ 남한의 평균 수명은 71.6세('91년 기준)

○ 완충기(2-3년간)의 경제건설 정책방향은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어 종래 중공업 우선정책의 변화를 시사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체제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 산업구조 불균형 심화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중공업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낙후로 중공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 노동집약산업인 경공업의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해 보려는 의도로 분석됨.
- 북한의 이번 당조직 개편과정에서 경제전문가(김달현, 박남기 등)들을 탈락시켜 제3차7개년계획 실패의 책임을 일단 묻고
- 앞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초가 되는 농업과 경공업부문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맞는 무역부문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는 전략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 향후 2-3년간의 완충기중 체제유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묘방을 모색하려 할 것임.

(주간 북한동향 제154호)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최

### 개요

- 북한은 '93.12.9-11간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일성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를 개최하고 4개 의안을 토의·처리하였음.

#### ※ 4개 의안

- ①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 ② 건설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중 동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률을 승인함에 대하여
- ④ 조직문제

### 주요 내용 및 분석

#### 가.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의 개선 강화문제 토의

- 회의 첫날 김기남 비서(당 선전담당)의 40여분간 지속된 장황한 발제 보고를 통해
  - 최근 단군능 발굴은 우리 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것과 평양이 인류의 발상지라는 것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감행하는 부르조아사상 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막고 우리 민족유산과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 이어서 이틀간에 걸친 토론자들의 집중적 토론 끝에 민족문화 사업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9개 사업을 결의하였음.

-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문화유산 문제를 제기한 것은
  -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문화를 지닌 단일민족임을 내세워 그들이 표방해 온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부각시킴으로써
  -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불러 넣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고취, 김일성부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이어 민족문화 계승 발전 문제를 제기, 우리측의 상해임정 정통성 계승을 희석시키고 민족정통성 문제에서 주도적 입장에 서려는 의도로 보임.

#### 나. 건설법 채택 및 기타 법률 승인

- 이번에 제정된 건설법(6장 53조)은 기초계획에서부터 설계, 건설, 감리에 이르는 건설 총계획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질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 이 법은 지금까지 미비되었던 도시건설이나 건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건설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한 이기주의, 분파주의,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중 동 상설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세관법』 개정과 『국장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개정 등을 승인하였음.

다. 조직개편

○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주석】

직 책	신 임	비 고
부주석	김영주(당 정치국 위원) 김병식(사회민주당 위원장)	현재 이종욱,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직 책	신 임	해 임
상설회의 의원	주성일(직총 위원장) 김석형(사회과학원 원장) 류미영(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정 신 혁 (『조평통』 부위원장)
예산위위원장	한성룡(당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인민위 위원 해임	박 남 기 (평양시 행정 경제위원장)
외교위 위원장 위 원	황장엽(당 비서국 비서) 김정숙(『민주조선』 책임주필)	최 태 북 (당 정치국 후보위원)
법 제 위 위 원	김국훈(인민경제대 총장)	
통일정책위 위원	백남준(『조평통』 서기국장)	

-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 김영주와 김병식(사민당 위원장)을 부주석으로 선출한 점
  - 박남기를 최고인민회의 예산위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한성룡(당 정치국원 겸 당 비서)을 보임한 것
  -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 위원장에 최태복(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해임하고 황장엽(당 사상담당비서)을 보임한 것 등임.
-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18일의 당 정치국 회의 이후 각급 사회단체 및 북한 주민을 총동원하다시피 전개한 정치행사에서 “김정일시대” 개막과 김정일 우상화를 요란하게 떠들어 왔던 것과는 달리
  - 김정일이 당 총비서 혹은 국가주석 등의 권력승계를 하지 못하고 김영주가 부주석으로 급부상, 재기용되었는 바
  - 이는 김정일이 잘못된 대외정책, 경제정책, 대남정책 상의 문제점들을 김영주를 기용하는 인사쇄신을 통해 타개하는 동시에 김정일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하여 김정일의 보호막을 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임.

※ 당 전원회의에 이어 김정일 측근중 경제담당 인물(김달현, 한성룡, 박남기)과 외교 및 대남담당 인물(최태복, 김용순)이 좌천, 탈락됨.

  - 따라서 앞으로 김영주와 그가 추천한 인물들이 표면에 나서, 북한의 현 위기상황을 초래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문제, 북한 내부분제 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개편중 남북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 '70년대초 남북조절위 위원장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하던 김

- 영주를 당 정치국 위원과 국가 부주석으로 전격 재기용하고
  - 적십자회담 자문위원이었던 김병식(당시 조총련 수석 부의장으로 일본통)을 부주석에 급부상시키고
  - '70년대 적십자회담 자문위원으로 남북대화에 참여하면서 최근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시까지 중심 역할을 한 백남준(조평통 서기국장)을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위원으로 기용한 것으로 보아
  - 냉각된 남북관계를 틀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위하여 북한의 당·정·의회가 다함께 대남정책 수행상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됨.
- 외교위 위원장에 황장엽을 선출한 것은
- 그간 폐쇄적 자주외교 기조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온 북한의 외교현실의 전면에 사상담당 당비서인 그를 앞세워 대외적인 지인이 많은 점(일본, 미국, 중국 등지의 교포를 비롯한 외국인사들)을 활용,
  -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무역 제일주의 전략방침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는 이론적·사상적 기초 확립과 더불어 현실을 타개해 나가 보려는 시도로 보임.
- ※ 또한 김병식과 함께 대일관계 개선도 도모해 보려는 것으로도 보임.
- 기타 주성일, 유미영, 김석형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보선은 단체장 보직에 따르는 당연직 자동인사이며 최고인민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보선은 각 분과위의 보장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주간 북한동향 제154호)

## 대외경제위, 무역확대 방침 표명

### 개 요

- 북한의 구본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1.11 중앙방송 『연단』에서, 당이 제시한 『무역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무역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무역 확대 방침을 표명하였음.

### <내용요지>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해서 우리의 활동이 지장을 받는 조건에서 난관을 맞받아 나가면서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우리는 당에서 제시한 『무역제일주의』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혁명적 경제전략 실현에 기여할 결의를 다지고 있음.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시장을 새롭게 더 많이 개척하는 한편, 수출품 공장들의 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함.
- 또한 수출품을 직접 만드는 노동자,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다른 나라 시장들과 구매자들의 요구, 시세가 높은 상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수출품종을 늘이기 위한 대책도 세워줌으로써 수출품 생산에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겠음.

## 분 석

- 북한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의 대외무역발전에 관한 이번 언급은 작년 12.8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역제일주의』를 수행하기 위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음.
  -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는 향후 2-3년간의 경제건설 완충기간중 농업부문, 경공업부문과 함께 무역부문에 경제정책의 우선을 둘 것을 결정하였음.
- 북한은 '89년 기존의 동구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된 이래 매년 대외 교역 규모가 감소되어 왔으며, 최근 수년간 북한 최대의 무역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 경화결제방식으로서의 전환압력을 받아 왔음.
  - '92년부터 북한의 최대 원유공급국인 중국과 부분적으로 경화결제 방식 채택
- 또한 북한의 수출상품은 아연, 압연강재 등 일부 금속제품 외에 수산물, 광산물, 목재 등 1,2차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이 품질 등의 문제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향후 북한은 수출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낡은 설비의 교체 등에 장기간 막대한 비용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중공업부문 보다는 북한의 현재의 산업여건상으로 추진 가능한 경공업부문의 산업정책 전환이 불가피함.
- 또한 북한은 무역규모 확대를 위하여 저가·저품질 상품의 수요시장 개척, 경공업 제품의 품질제고를 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 비교적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술·자본 등의 부담이 적은 임가공 무역의 확대와 러시아, 중국 등과의 중개무역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구분태 인적사항 : '87.11 무역부 부부장

'89. 8 무역대표단장, 시리아 방문

'92.12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표 1>

최근 북한의 무역 추이

(단위 : 억달러, %)

년도	'90년			'91년			'92년		
	총액	수입	수출	총액	수입	수출	총액	수입	수출
총액	47.7 (100)	28.1	19.6	27.2 (100)	17.1	10.1	26.6 (100)	16.4	10.2
중국	4.8 (10.1)	3.6	1.2	6.2 (22.8)	5.3	0.9	7.0 (26.3)	5.4	1.6
일본	4.8 (10.1)	1.8	3.0	5.0 (18.4)	2.2	2.8	4.8 (18.0)	2.2	2.6
러시아	25.7 (53.8)	15.2	10.5	4.7 (17.3)	2.8	1.9	3.0 (11.3)	2.3	0.7
기타 국가	12.4 (26.0)	7.5	4.9	11.3 (41.5)	6.8	4.5	11.8 (44.4)	6.5	5.3

<표 2> '91년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 구조(SITC분류별)  
(단위 : US\$ 백만, %)

구분		금액	구성비	수출주종 상품	주요 수출국
코드	항목명				
0	식료품 및 식용동물	111.4	12.5	수산물	일본(78), 중국(7.7), 홍콩(7.4), 태국(3.8)
1	음료 및 담배	0.71	0.07	과일주스, 엽연초	일본(60.6), 홍콩(22.5), 말레이시아(7), 싱가폴(7)
2	비식용 원 재료	100.6	11.3	금속광스크랩, 목재	러시아(49.7), 중국 (22.8), 독일(9.8)
3	광물성 연료 및 윤활유	63.54	7.2	석탄	일본(54), 중국(49)
5	화학 및 관련제품	21.95	2.5	비료, 금속염, 유황	중국(41), 인도네시아 (13.8), 싱가포르(11.4)
6	각종 재료별 제조 공산품	212	23.9	아연괴, 알루 미늄강재, 압 연강재	일본(55.2), 홍콩(7.4), 중국(7.4), 러시아 (4.7)
7	기계 및 운송설비	131.6	14.8	컴퓨터 관련기 기·부품, 섬유 및 의류제도용 기계, 전자부품	러시아(82), 인도네 시아(4.7)
8	기타 제조 제품(잡제품)	141.6	16	의류	독일(41), 일본(27.3), 홍콩(6.2), 방글라 데시(5.1)
9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제품	104.2	11.7	무기류	이란 등
	합계	887.6	100		

※ 자료원 : KOTRA자료

(주간 북한동향 제159호)

## 합영법 개정

### 개 요

- 북한은 '84.9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조총련 상공인 위주의 합영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92.10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11개 법령을 정비해 왔음.
- 그러나 합영법은 개정하지 않은 채 '92.10 그 시행세칙을 먼저 개정한 후, 지난 1.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합영법을 개정하고 1.26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5장 47조)을 발표하였음.

### 주요 특징

- 남한기업의 대북한 합영사업 투자관련 조문 개정(제2조)
  - 개정전 :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영할 수 있다.”
  - 개정후 :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 해외동포들의 합영사업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제7조)
  -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합영사업뿐만 아니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 분 석

- 북한은 구합영법에서 합영주체를 “해외거주 조선동포들”로 규정함으로써 그간 남한기업의 대북한 합영사업 투자가능성에 대해 명시적 태도표시를 유보하면서, UNDP·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간접적 투자만을 선호해 왔음.
-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합영주체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한 합영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두가지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음.
  - 첫째, 합영사업 추진주체와 관련한 법규의 개정은 북한당국이 합영법 운용과정에서 남한기업이 투자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법기술상의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며,
  - 둘째, 합영사업 추진주체를 “남한기업”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과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계속 강조해 온 북한 주장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남한기업의 대북한 합영사업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임.
- 현재까지는 투자주체와 관련한 용어변화 외에는 합영방식에 의한 남한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구체적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이번 개정에서 해외동포들의 투자시 세금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해외동포들의 대북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음.
- 또한 금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과 『합영법』의 합영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모순점은 해결되었음.

- 『외국인투자법』('92.10)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이 북한지역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을 설립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구합영법 아래서 개정된 시행세칙에서는 아직까지 합영사업 추진주체를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시행세칙은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간 북한동향 제161호)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정

### 개 요

- 북한은 12.7 정무원 결정 75호('93.11.29)로 채택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전문(21조)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하였음.

#### <출입절차 요지>

##### 가. 입국절차

- 여권 또는 여권대용증명서 소지 외국인
  - ※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포함.
  - 직접 입국시 :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투자 기업의 초청장 필요
  - 다른 지역 경유시 : 일반 입국시와 같이 VISA 필요
  - 관광증 소지자 : 자유로운 출입 가능
  - ※ 관광증은 『지대』안의 관광봉사기관, 기타 당국, 북한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 북한주재 외교관, 무역대표부·국제기구대표부 직원
  - 북한당국 발행의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 필요

##### 나. 자유경제무역지대 입국자의 북한내 다른 지역 여행

-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서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

#### 다. 출국절차

- 직접 출국시 : 사증없이 출국 가능
- 다른 지역 경유시 :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서 사증을 발급받은 후 출국 가능

#### 라. 중계화물의 통과

- 자유무역항 중계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북한 지역을 통해 외국으로 수송하는 경우
  - 통과예정인 국경지역의 출입국사업부서에서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통과 가능

### 분 석

- 이번에 북한이 채택·발표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은 '93.1 발표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시행령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외국인원 및 차량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경제개방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서 평가될 수 있음.
- 법리상으로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법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한 후, 그와 같은 일반법을 전제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특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현단계에서 북한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음.

38 통일교육

-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사전허가 필요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의 초청장 요구 조항은 사실상의 VISA 심사제도로서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외국인 입출국의 전면적 통제가 가능함.
- 따라서 자유경제무역지대일지라도 외화획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외국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허가하려는 조치로 보임.

(주간 북한동향 제154호)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발표

### 개 요

-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80호('93.12.30)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8장 48조)』을 채택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을 발표(1.11)하였음.

### 주요 골자

- 목 적
  - －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 보장 및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 보호
- 적용대상
  - － 북한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및 외국기업
- 인력 채용
  -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채용
    - ※ 관리인, 특수직종 기술자·기능공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
  - －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관리·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 체결
  -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 체결

#### 40 통일교육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 채용
- 인력 해고
  -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알선기관과 합의 후 채용기간 종료전에 해고 가능
  - 직업병, 업무상 부상, 6개월간 병가 기간중, 임신, 산전·산후휴가 중에는 해고 불가
- 종업원 사직
  -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술·기능부족, 학교입학 등의 경우 사직 제기 가능
- 기능공 양성
  -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양성반 조직 운영
  -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조직·운영 가능
- 노동 일수 및 시간
  - 주 6일, 일일 8시간
  - ※ 시간외 노동을 시킬 경우 월 48시간 초과 불가
- 노임
  - 최저 월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는 160원)
  - 노동시간 연장작업, 야간작업의 경우 노임과 함께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 가급금 지급
  -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연장 노동은 노임과 함께 일당 및 시간당 노임액의 100% 가급금 지급
- 사회보험·사회보장
  -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혜택 제공
  - ※ 보조금·연금은 북한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

-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
- 제재 및 분쟁해결
  - 노동행정기관은 규정을 어긴 외국투자기업에게 벌금부과
    - ※ 벌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벌금부과 통지일부터 15일내에 차상급 기관에 제기 가능
  - 분쟁사건은 북한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

## 분 석

- 이번에 공개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북한이 '92년말부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발표한 관련법들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외국인기업법(제20, 21조), 외국인투자법(제16조)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제21조) 등에 규정한 노동인력 관리·운영에 대한 시행세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의 여타 외국투자유치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동규정도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80.7)과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규칙』('84.1)을 혼합·원용한 것임.
- 이번 규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북한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제4조)한 점
  -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 최저 임금을 북한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제26조)한 점
- 노동인력 채용시 인력알선기관과의 계약 체결, 해고시 해당기관과의 합의를 의무화(제9조, 14조)한 점
- 분쟁사건은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으로 제한한 점 등임.
- 북한이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 정비차원에서 제정한 이번 규정에서 외국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일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북한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특수직종 기술자·기능공·관리인을 채용할 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해야 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시에는 북한의 알선기관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무관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음.
  - ※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해당기업의 자율적 채용이 어느정도 허용되거나 사전 설립승인 신청시 직급별·직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 등이 일반적이며, 중국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 파견 등은 별도 계약 또는 필요시에 자유스럽게 하고 있음.
  - 노동임금과 관련, 노임을 북한원화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북한이 공정한환율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160원~220원(미화 \$160-\$220상당)은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 북한의 환율제도는 공정한환율(1\$ : 1.01원)과 무역환율(1\$ : 2.13원)등 이중 환율제 채택

- ※ 중국의 경우 지역별·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노동자 최저임금은 50 \$ - 150 \$ 수준
  - 고용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1개월 분 지급)은 국내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노동생산성·난이도, 기능의 급수 등에 따른 임금인상과 관련,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 노동고용 및 환경문제에 대한 규정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부과, 임금인상, 후생복지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은 북한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을 통해 해결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는 외국기업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이로 볼 때 이번 규정도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유치를 위한 여타 국가들과 다른 특혜조항은 거의 없으며,
  - 다만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내 근로자 임금을 북한의 타지역 임금(70%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개방에 따른 체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 이 지역에 외국투자를 집중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주간 북한동향 제159호)



# 대남동향

---

- '94년도 대남 투쟁방향 제시
- '94년도 대남 노동운동 방향 제시





## 대남동향

## '94년도 대남 투쟁방향 제시

## 개 요

- 북한은 1.3 대남 위장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중앙위 명의의 『시국선언』과 『당면 투쟁구호』를 발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해 새해 투쟁방향을 제시하며 “새해에는 문민정권과 총결산을 하라”고 선동하였음.

## — &lt;시국선언 및 투쟁구호 요지&gt; —

## 【시국선언】

새해 정국은 김○○ 문민정권과의 총결산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 국민과 더불어 김○○정권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그를 타도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 ① 가짜 문민정권을 타도하고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계 애국민중은 예속적이며 파쇼적인 가짜 문민정권을 타도하고 진실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 ②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본 궤도에서 전개하여야 한다.

— 쌀시장 개방 반대투쟁으로 시작된 전민중적인 투쟁을 자주, 민주, 통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 미국을 추방하기 위한 거족적 반미투쟁으로 식민지 파쇼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자.

③ 애국적 민주세력의 일치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 현 정권은 지금 애국적 민주세력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고 말살하려고 흉책하고 있다. 애국적 민주세력은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당면 투쟁구호】

(민주화 투쟁 11개)

○ 문민의 탈을 쓰고 민주를 교살하는 김○○ 독재정권 타도하자.

○ 가짜 민주개혁에 속지말고 싸워서 민주화를 실현하자.

(자주화 투쟁 14개)

○ 문민판 사대매국의 대미·대일 예속 깊어진다. 친미·친일 사대역적 김○○을 처단하자.

○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핵무기 추방하자.

○ 반미로 미국쌀 막아내고 반미로 우리쌀 지켜내자.

(통일투쟁 7개)

○ 남북대결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이룩하자.

○ 10대 강령 기치따라 통일진군 가속화하자.

○ 분열책동 짓부수고 연방제 통일 실현하자.

(연대투쟁 11개)

○ 참여속의 개혁 참여속의 비판은 자멸의 길이다.

주체의 진리로 개량화의 탁류를 밀어내자.

○ 민족민주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자.

분 석

○ 북한은 매년 1.1 『민민전』 중앙위 명의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를 발표, 우리 사회의 일부 반정부 세력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 해의 “투쟁목표”를 제시해 왔음.

- '91.1.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
- '92.1.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
- '93.1.1.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 올해의 『시국선언』 및 『당면투쟁구호』는

— 1.2 『민민전』 중앙위 확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이를 통해 심의·의결된 것인 양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 연례의 『신년메세지』를 대신하여 새해의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음.

※ 북한은 우리 사회내 주요 사건 발생시마다 『민민전』 명의로 『투쟁구호』를 발표해 왔음.

- '91. 3.15. “당면투쟁구호”
- '92.11.11. “대선투쟁구호”
- '93. 6.11. “당면투쟁강령”, “당면투쟁구호”

○ 이 두 문건이 갖는 내용상의 특징은

— 올해를 “김○○ 문민정권과의 총결산”이 필요한 때로 못 박고, 대남투쟁 기본 방향으로 제시해 온 『자주·민주·

통일』투쟁을 강도 높게 선동하는 가운데

- “가짜 문민정권 타도” 등 반정부 투쟁을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악성적 비방구호와 함께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 전반적으로 세력이 위축되어 있고 일부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내 반정부 세력의 재결집을 부추기기 위해 각각의 노선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단결”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임.
- 이와 함께 북한은 근로자·농민, 대학생, 국군장병에 대해
- “노동자 농민 여러분은 임금인상과 노동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과 쌀시장 개방 반대투쟁을 벌이라”(1.1, 평방 논설 “새해에 보내는 말”)
  - “남녘의 청년학생들은 통일투쟁에 앞장 서서 외세와 매국 반역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의 길에 떨쳐 나서라”(1.5, 평방 논설 “조국 통일 투쟁에 앞장 서자”)
  - “국군장병 여러분은 북침전쟁연습을 반대 배격해 나서라”(1.4, 평방 논설 “통일성전에 떨쳐 나서자”)
- 고 각각 선동하고 있음.
- 북한이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각계 각층의 반정부·자주화 투쟁을 강력히 선동해 나르고 있는 것은
- 김일성이 '94 신년사에서 우리 문민정부를 “과거 파쇼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이상 지켜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 국제화시대에 적응키 위해 전국민이 총력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유도하여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해 보려는 통일전선전술임.

(주간 북한동향 제158호)

## '94년도 대남 노동운동 방향 제시

### 개 요

- 북한은 금년들어 1.22까지 10회에 걸친 평양방송 논설(“남조선 노동운동권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시리즈를 통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실현 등 금년도 대남 노동운동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음.

#### <논설 요지>

- 남조선의 노총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서 민주노조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노동계급의 진정한 노동조합을 건설함으로써 잠정 복수노조, 궁극 단일노조 건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남조선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략적 과제임.
- 경제투쟁을 통해서 양양된 대중의 열의와 기분을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 승화시켜야 함. 다시 말해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세금수탈 반대 등 경제적 요구관철을 위한 투쟁을, 노동악법 철폐, 외군 철거, 파쇼정권 타도와 같은 요구와 결합시켜 진행해야 함.
- 파업은 노동자 대중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위력한 수단임. 전노협을 비롯한 민주노조들은 파업투쟁을

기본무기로 삼고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기업  
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함.

## 분 석

### ○ 북한은 금년들어

—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를 “과거의 파쇼독재정권  
과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지켜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주장한 이후

— 1.1 평방 논설 “새해에 보내는 말”, 1.3 민민전 중앙위의  
『시국선언』 및 『당면투쟁구호』 등을 통해 우리의 근로자들  
에게 올해에 임금인상 및 노동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을 벌일 것과 문민정권을 타도할 것 등을 선동해 왔음.

### ○ 이번 일련의 논설은 이와 같은 대남선동의 연장선상에서

—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이 처한 여건과 노선대립 등  
제반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 이를 기초로 하여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실천노선과 방  
향을 조목조목 제시한 것으로서

— 북한이 이처럼 투쟁 목표로부터 노조결성방법, 파업투  
쟁 등 구체적 실천방향까지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근로자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은 드문 일임.

### ○ 북한이 새해들어 이처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전·선 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 문민정부 출범 이후 퇴색하고 있는 반정부 노동운동 세

- 력들에게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반정부 노동  
운동의 재연을 유도함과 동시에
- 봄철 임금인상 투쟁의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 올해 노동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금년도 반정부 투쟁으로 연결  
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임.

(주간 북한동향 제161호)





# 대외동향

---

- 『자유아시아방송』 법안 통과(미국) 관련, 비난
  -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방중
  -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 방북



## 대외동향

## 『자유아시아방송』 법안 통과(미국) 관련, 비난

## 개 요

- 북한은 미국의회 상원에서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법안이 통과(1.25)된 것과 관련 1.27 증방을 통해 이 방송은 미국이 북한을 와해시키려는 또하나의 반사회주의·반북한 책동의 산물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음.

## 〈비난 요지〉

- 자유아시아방송의 기본대상이 조선반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이것은 미국의 반사회주의·반공화국 책동의 또하나의 산물로서 우리를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켜 보려는 그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이 지금 본격적인 단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이 이번에 자유아시아방송을 개시하려는 시도는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음으로써 우리 인민들 속에 부르조아 사상의 독소를 퍼뜨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은 악명높았던 자유구라파방송의 변종에 지나지 않음. 미 중앙정보국의 지휘를 받은 자유구

라파 방송은 온갖 비방중상과 모략선전으로 동구라파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복귀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놀았음.

- 미국은 동구라파의 철의 장벽을 무너뜨린 이런 방법으로 아시아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나라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무마시키며 특히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허물어 보려고 자유아시아 방송을 개시하려 하고 있음.
-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부르조아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반동적인 방송에 추호도 사상적 변질을 가져 오지 않을 것임.

## 분 석

- 북한은 현재
  - 경제난 타개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경제분야에서의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준비하면서
  - 김부자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사조의 유입차단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 개방의 불가피성과 폐쇄체제 유지라는 상호 모순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 북한이 동 방송을 그들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평화적 이행전략의 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 핵문제가 북한체제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 겉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승장구”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체제 유지에 자신감을 상실한 채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평화적 이행전략(平和的 移行戰略)

- '7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개발·적용한 일종의 심리전 전략으로 당초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항하여 자유세계를 수호하고 공산화로 잃었던 세력권을 회복코자 시도된 전략이며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하여 상대측의 약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구상임.
  - 북한은 이 평화적 이행전략을 미제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복·와해공작으로 규정하고, 체제 방어차원에서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를 “화평연변(和平演變)”이라 하여 간접침략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중국도 1.27 외교부 대변인(오건민)의 주례 브리핑을 통해
- 미국이 이 방송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아시아국가들의 내정을 간섭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동 계획의 중지를 요구하였음.

(주간 북한동향 제161호)

##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방중

### 개 요

-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1.15 중국을 방문, 강택민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량 전인대 외사위 위원장 등 중국의 당·정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珠海 경제특구를 비롯한 중국 내 개방지구를 돌아보았음.

#### ※ 체중 동정

일 자	내 용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량 전인대 외사위 위원장 등 영접</li> </ul> </li> <li>○ 정광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이숙쟁과 부부장 주선경, 주중 북한대사 주창준 등 배석</li> </ul> </li> <li>○ 정광근 주최 만찬 참석</li> </ul>
1.16	○ 주량 전인대 외사위 위원장 면담
1.17	○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면담
1.18	○ 광둥성 광주 향발
1.19 ~1.21	○ 광둥성 珠海 경제특구 시찰

## 분 석

- 황장엽의 이번 중국 방문은
  - '92.5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중 이후 최고위급 북한 인사의 방문으로서
  - '93.7.27의 호금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93.9.13의 왕한빈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및 '93.11 양측 군사대표단 교환 방문과 함께
  - 한-중 수교이후 다소 위축되었던 북-중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임.
- 이번 황장엽의 방중기간중 중국측은
  -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며, 양국의 전통적 친선은 두나라 ‘노일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어준 것이고 피로써 맺은 것”,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강택민)
  - “친선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되는 것”(정관근) 등 양측 간 친선을 강조하고
  -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노력에 관해서도 설명하였음.
- 이에 대해 황장엽은
  -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중국의 성과를 찬양하고
  - “조선인민들은 중국 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자기의 성

과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황장엽은 중국의 경제특구 시찰에도 나섰는 바
  - － 광둥성 珠海경제특구를 방문하는 동안 중국의 경제개혁·개방현장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였음.
- 이로 볼 때 황장엽의 이번 중국 방문은
  - － 쌍방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친선 방문이라는 성격과 함께
  - － 중국의 개혁·개방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주간 북한동향 제160호)



##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 방북

### 개 요

-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단장 : 국방 및 무력병참 장관 ‘모하메드프루잔데흐’)이 12.6 북한과 이란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여 12.9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와 동 대표단장간의 회담록에 조인하였음.

###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 방북 동향

일 자	동 향 내 용
12.6	○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 도착 -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한수길 영접 - 인민군 명예위병대 사열 ○ 환영연회(저녁)
12.8	○ 동 대표단장, 오진우와 담화
12.9	○ 북한-이란 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진행 및 회담록 조인

### 분 석

- 북한은 이란·이라크戰 前까지만 해도 군사훈련 요원 약

400여명을 이라크에 파견('75-'76년)하는 등 반미적인 이라크를 지원하였으나 이란이 미국과 외교를 단절하고 이란·이라크전이 발발한 후 미국무기체계를 포기하고 무기도입선을 다양화하게 되자, '80년대 초반부터 이란에 군사기술요원 700여명 이상을 파견하고 후반에는 미사일 요원 300여명을 파견하면서 이란에 소총, 전차, 대전차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총무기 수출액의 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수출 : SCUD-B 160여발, SCUD-C 40여발, AT-3 300여기, SILK WORM 200여기 등

- 북한의 최대무기 수출국으로 등장한 이란은 무기대금의 상당부분을 현물 석유로 북한에 공급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체계 유지에 기여하여 왔으며, 양국은 반제국주의 공동노선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각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음.

※ 이란의 무기체계와 북한의 에너지체계가 상호 보완

- 금번 이란 정부 경제대표단의 방북에서는 경제담당 장관이 아닌 국방장관이 단장이 되고 12.9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조인한 사실만 보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정도의 군수산업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동 대표단장은 이란 출국직전 기자회견(이란 관영 IRNA통신)에서 북한의 주택건설 협력 희망과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문제 논의를 언급하였으나 모스크바방송(12.7)은 미사일 등의 기술이전 분야에서의 협력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추정

북한-이란간의 군사관계 발전

- '89. 12 이란 '하메네이' 대통령 방북시 군사관련 협정 체결  
(매년 공동 군사위원회 개최하여 군사협력관계 강화)
- '90. 11 오진우, 이란에 가서 양국 『군사협력의정서』 조인  
(북한, 이란과 SCUD 생산공장 건설 지원 계약 체결)
- '91. 9 이란 국방장관 '토르칸' 방북, 군사협력분야 심도 있게 논의
- '93. 1 이란 혁명군 방위사령관 '모흐센 레자이' 방북, 김 일성과 면담  
(오진우, 김달현과 다양한 부문의 상호 협력 강화 문제 논의)

(주간 북한동향 제154호)



# 자 료

- 북한 「개정 합영법」 전문
- 북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전문
  - 북한 「외국투자은행법」 전문
-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전문



## 북한 「개정 합병법」 전문

'94.1.20 개정

### 제1장 합병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안에 합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밖에서의 합병기업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 3 조 합병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병을 장려한다.

제 4 조 합병당사자는 합병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5 조 합병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6 조 합병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 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 10 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 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병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 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2 조 합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 13 조 합병기업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 수 있다.

제 14 조 합병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 이상 돼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 제 3 장 합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 16 조 합병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최고결의 기관이다.

제 17 조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병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 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을 한다.

제 18 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 19 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 20 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이사회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 21 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 22 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 조업일로 된다.

제 23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 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 24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 25 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27 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 이용해야 한다.

제 28 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30 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31 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32 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 조직을 내세울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 33 조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

다. 연간 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 34 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뺀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35 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 수 있다.

제 36 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문화 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 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 37 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 38 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 받을 수 있다.

제 39 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 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해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 40 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 41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 42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43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 44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 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 45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 46 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 해야 한다.

제 47 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주간 북한동향 제161호)

## 북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전문

(정무원 결정 제80호, '93. 12. 30)

###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노동보수의 지불,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노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인력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액은 그의 노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노동보수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노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10 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한다.

## 제 2 장 인력의 채용·해고

제 11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노동생활보장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소재지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13 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병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 1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 15 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 16 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 17 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젓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 18 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과 일한 연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19 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월전에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 제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 21 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 2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 제 4 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 23 조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범위에서는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시켜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5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 제 5 장 노동보수

제 26 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은 2백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노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

불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 27 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 정도와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 28 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를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 2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 30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 31 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 32 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지급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  
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 33 조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날에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 제 6 장 노동보호

제 34 조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  
완비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  
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 조건을 보장하여 종업  
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 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 기술교육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 36 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종업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  
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 3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  
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  
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노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 38 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 중독과 같은 입증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호 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 7 장 사회보험·사회보장

제 39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국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 연금지불 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 40 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 41 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

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

제 42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요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요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 43 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 44 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균중문화 체육사업·후생시설 운영 같은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은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45 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 46 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을 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 47 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

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48 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북한 「외국투자은행법」 전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42호, '93.11.24)

### 제 1 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자유경제 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제 7 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 8 조 공화국 영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자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용,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 9 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 합영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시에 기본 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은행관리 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 성원명단, 투자자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 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업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정산위원회 감독밑에 정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방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 18 조**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

본금의 50% 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에, 또는 자기 부담채무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 21 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결산이익금에서 5%를 떼어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만 쓴다.

제 22 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 제 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 23 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이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 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당업무.
12. 기타 업무.

제 24 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 25 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 26 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다. 연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 27 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가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분기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 분기 첫날 15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28 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은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29 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 30 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증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31 조 은행설립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2 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전문

(정무원 결정 75호, '93. 11. 29)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가 한다.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5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 6 조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제 7 조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제 8 조 다른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국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이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자유무역을 통해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17 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해당발급 부서에 신청하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 18 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1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린다.

제 20 조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마약밀수업자, 전염병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

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 21 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특**

**집**

-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문



##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문 ('94. 1. 21, 세종문화회관)

### 1. 『큰 교육』으로서의 통일문제

존경하는 李洪九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여러분!

먼저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인사드리고, 통일문제에 관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 통일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열정을 갖고 많은 수고를 해오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님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때마침 바로 어제는 대통령께 통일원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일원의 업무보고를 마치자 마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겸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줄곧 교육의 길에서 한 평생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민족의 숙원을 풀어나가는 통일원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생활의 분야가 달라진 것 같이 여겨질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진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생을 교육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통일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해서, 교육자로서 하던 책무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가르치고 학교 행정을 하는 것은 『작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복지를 지향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같은 보편적인 가치는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존엄성과 자유,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민주국가의 건설을 향해서 국민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일, 이것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큰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은 먼저 우리들의 가치관과 마음가짐, 생활양식이 올바르고 하나된 방향으로 변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인간의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통일은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이 개인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듯이, 통일에 있어서는 민족의 정신을 올바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문제야말로 교육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민족과 국민 모두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엄청난 과제입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다루기 쉽지 않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인해

교착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를 꿰뚫는 역사의식과 통찰력 있는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2. 통일환경의 변화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오늘의 세계는 일컬어 軸으로부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본질과 내용은 급속하고도 근본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 흐름이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으로 경주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를 동서로 갈라 놓았던 냉전체제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와해되었습니다. 이같은 국제정치 구도의 不可測性으로 인해 바람직한 측면과 함께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냉전체제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던 체제 사이에 대결, 이념간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인간 기본권의 제약 등은 현저하게 완화·개선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다원적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이념 대결은 실리 추구로 대체되고, 군사력을 대신하여 경제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군비 증강을 위한 소모적인 경쟁 비용들을 복지와 번영을 위한 창조적인 경쟁 비용으로 전용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인 조류속에서 냉전체제로 인해 분단을 강요받아야 했던 민족들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후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통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은 지나친 낙관입니다.

유고의 종족 분류와 소말리아 내전에서 보듯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민족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옛 사회주의 국가들도 과거의 독재와 통제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크나큰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우기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되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서만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인 유럽경제지역(EEA)이 탄생한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세계 1백 16개국이 참가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8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됨으로써, 세계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새로운 틀속에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나라마다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제화·개방화의 높고 험난한 파도가 현실로서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도전은 우리들이 이에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백여년전 국제정세의 변화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권상실의 비운을 체험한 역사적 교훈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과오는 결코 되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역사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올해 정부의 국정목표를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제시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정세가 갖는 또하나의 특징은 국제정치의 場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치는 냉전질서를 이끌어 왔던 구미 중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가 또 하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인구의 1/3이상이 살고 있으며, 높은 발전에너지와 성취욕을 가진 활기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동아시아의 활력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성장 잠재력은 인류 전체의 희망으로 회

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의 잠재력은 아직까지는 국제정치를 이끌 수 있을 만큼, 그 위상이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국가들간의 관계는, 지역단위로서 협력과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역사의 새로운 흐름에 한발자욱 뒤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체제는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북한, 중국,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의 붉은 벨트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국가들간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이질성, 가치체계의 상충, 그리고 현격한 경제적 차이 등도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체제의 형성을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거대한 경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에서 그 어느 곳보다 냉전적 대결과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통일 환경이 개선되고 통일의 날이 가까워진 듯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가는 길은 아직 캄캄한 이 현실을 몸으로 부딪쳐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낡은 냉전체제의 대결 구도에만 머문다면, 더 이상 설 땅도, 기댈 언덕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앞장 서가고, 21세기의 주역 국가로 발돋움하자는 것은 口頭禪에 그칠 수 없습니다. 통일 환

경의 여러 변화 양상들을 기필코 통일에 유리하게끔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3.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세계적인 개혁·개방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은 최근 몇년사이에 그 모순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 체제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전환기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일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90년도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3.7%, '91년 -5.2%, 그리고 '92년에는 -7.6%로 떨어지는 등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결과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생활필수품 등의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로 환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에서 한 해를 보내는데 필요한 식량 수요량은 650여만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은 427만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밖에 없는데, '92년도는 중국에서 83만톤을 수입해도 총 510만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140만톤에 달하는 식량이 부족하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한끼 이상을 굶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93년도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냉해 등 농업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벼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착황이 평년작 수준보다 15%~20%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부족 현상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북한은 채굴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에너지원인 석탄 자원의 생산이 계속 감량되고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따른 원유 도입량의 감소로 인해 에너지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은 건설, 공업생산, 유통 등에까지 파급되어 전반적인 산업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체제가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북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핵문제를 앞세워 긴장분위기를 한껏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노선입니다.

북한은 지난 '93년을 “전쟁준비 완료의 해”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승(휴전) 40돌』 행사를 예년과 달리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NPT 탈퇴와 준전시상태 선포 등을

통해 체제 내부의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방향은 부분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방향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년동안 김일성의 연설 등을 통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면서 대외관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개방을 향한 나름대로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한적인 개방정책은 한결같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올해를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혁명적 전환의 해”라고 강조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변함없이 『우리식 사회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올해의 투쟁목표를 문민정권을 총결산 짓는 것”으로 내세우면서, 『전민족 대단결』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일성 신년사에서 천명된 정책방향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올해에도 기존체제와 정책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추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체제유지에 해롭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제한적인 대외개방은 신중하게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관계가 원만히 조정되어 스스로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핵무기 개발의혹을 적극

해소해 가는 성의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나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핵의혹을 투명하게 마무리 짓는 길이 불가피한 관건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행히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숨가쁜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문제이지는 하나,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설득해 나간다면, 북한의 핵문제도 중국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남북관계는 이미 쌓아온 토대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도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 4. 통일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적어도 금년초에는 그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남북한간에 채택·발효된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산가족들의 한맺힌 아픔을 덜어주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민족 화해와 재결합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측에 대해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향방문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제의를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측이 이를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선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만이라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3국을 통한 서신왕래와 가족상봉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사이의 합의서 이행과 병행하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통일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남북한이 통일 목표에 합의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노력의 목표는 곧,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성숙된 풍요한 복지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며 법이 지배하는 민주

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경제적 풍요속에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겨레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이같은 보편적인 가치지향에서 남북한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통일작업은 남북한이 이러한 통일목표에 접근·합의하는 일이고, 남북간에 서로 그 목표를 향해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일입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이미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만연되었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성숙을 위해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의 참된 모습이며, 통일과 우리 민족의 세계화를 향한 진실된 접근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변해야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의 날이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적인 개혁·개방 조류와 그들의 내정 실패 등으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징후들은 여러 측면에서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논의는 감상적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로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하고 현실적인 자세로 북한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지난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남북대화에 대해 이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면서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접촉이 없는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대화와 접촉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 사이에 『대화를 위한 대화』, 『모양내기 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 5. 맺음말

이미 말씀드린대로, 통일문제는 하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엄청난 현실적인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통일방안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그 요체는 우리 내부의 철저한 준비와 역량을 비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나날의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위대한 민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향한 내부 개혁은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은 곧 통일의 조건이요, 통일된 조국은 개혁의 결실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복된 앞날을 기원하는 우리들의 통일 노력이 교착된 남북한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반드시 바꾸어 놓고야 말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고 노력하는 이에게 성취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 함께 상기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숭고한 통일 도정의 선두에서 국민적 통일역량을 결집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李洪九 수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그러한 노고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일지

---



## 북한일지

- '93.11. 8 ○ 북한-중국 운송에 관한 협정조인
11. 9 ○ 조국전선대표단(단장 서기국장 유호준), 라오스 방문을 마치고 귀환(10.21~11.9).
- 11.10 ○ 조총련, 핵개발 송금 부인 「성명」 발표.
- 11.11 ○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미국에 대해 핵일괄타결안 제의·수용 주장 「성명」 및 「담화」 발표  
○ 군친선참관단(단장 중장 옥봉린), 중국 향발.
- 11.12 ○ 북-캄보디아간 「경제 및 과학기술문화 협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합의서」 조인(프놈펜).  
○ 북-캄보디아간 「구상무역에 관한 의정서」 조인(프놈펜).
- 11.13 ○ 캄보디아 독립 축하사절단(단장 총리 강성산), 캄보디아 방문 마치고 귀환(11.7~13).  
○ 조국전선 서기국, 한국정부의 민족정통성 회복노력 비난한 5개항의 「공개질문장」 발표.
- 11.14 ○ 조평통대변인, '93독수리훈련 실시 비난 「담화」 발표.
- 11.15 ○ 『직총(職總)』 제6기 26차 전원회의 진행(평양).  
○ 『女盟』 제5기 18차 전원회의 진행(평양).
- 11.16 ○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성명 발표
- 11.17 ○ 『사로청』 제3차 전원회의 개최(11.16-17)  
○ 김일성, 평양시내 어린이들에게 과일공급 지시  
○ 『농근맹』 중앙위 제21차 전원회의 개최(11.16-17)

- 11.18 ○ 김정일, 경공업학원 화장품시험공장 등에 감사  
○ 노동당 대표단, 영국 향발
- 11.19 ○ 독일 공산당 대표단, 평양 도착  
○ 노동당 대표단, 덴마크 방문후 귀환
- 11.20 ○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핵문제관련 강연회 개최 (11.16)  
○ 노동당-독일공산당 회담 진행
- 11.21 ○ 전국각지, 도 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이재윤 노동행정부 부장, 인도네시아 방문후 귀환
- 11.22 ○ 과학기술대표단, 중국 향발  
○ 조·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40돌 관련 연회 개최
- 11.23 ○ 『범민련』 결성 3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인민문화 궁전)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소집 공고  
○ 인민군 친선참관단, 중국 방문후 귀환  
○ 중국 공청단 대표단, 평양 도착
- 11.24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투자은행법」 공포  
○ 이성호 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한적』총재에 전통문
- 11.25 ○ 러시아출판사, 『김일성문헌집』 출판  
○ 전국 7.11붉은기 동 인민반 열성자대회 개최(11. 24-25)
- 11.26 ○ 외교부대변인, 한·일의 핵무기개발 주장 관련 「담화」발표.  
○ 북한군 공병대회 진행(11.25~26, 평양).
- 11.27 ○ 경제대표단(단장 대회경제위원장 이성문), 트리폴

- 리에서 진행된 북-리비아간 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 참석후 귀환(11.15~27).
- 11.28 ○ 한민전대변인, 대통령의 방미관련 규탄성명 발표
  - 11.29 ○ 외교부대변인, 북-미회담 중지시 NPT탈퇴유보 철회 주장한 「성명」 발표
  - 11.30 ○ 미군유해 33구 미국측에 송환
  - 12. 1 ○ 범민련 해외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성명」 발표.  
○ 주중대사 주창준, 미국에 대해 「핵일괄타결안」 수용촉구 「기자회견」 진행(북경).
  - 12. 2 ○ 북-중간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46차회의 결정서」 조인(북경).  
○ 「전국 공산주의 미풍 선구자대회」 개최(12.1~2, 평양).
  - 12. 3 ○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비공식 실무접촉 진행(뉴욕).
  - 12. 4 ○ 주북 노르웨이대사 얀토레 홀비크, 이임
  - 12. 5 ○ 김일성, 요르단왕자 일행 면담
  - 12. 6 ○ 「애국화학 증착분공장」 준공  
○ 북한군 해군대표단(단장 대장 김일철), 쿠바 향발
  - 12. 7 ○ 라오스 당 및 정부대표단, 평양 도착  
○ 조선사회민주당 대표단, 동남아 방문후 귀환
  - 12. 8 ○ 오진우, 이란 국방 및 무력병참상과 담화  
○ 북한 상품전람회, 인도에서 개막
  - 12. 9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막  
○ 북-이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공동위』 제5차 회의 개최

- 12.10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2일제)
- 12.11 ○ 북-라오스,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12.10)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폐막
- 12.12 ○ 김정일,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이채복에  
80돌 생일상 전달
- 12.13 ○ 수산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와 일본의 핵폐기물 수  
장관련 담화 발표
  - 외교부, 미국의 북한 핵문제 간섭 규탄담화 발표
- 12.14 ○ 중화 전국총공회 대표단, 평양 도착
- 12.15 ○ 북한-몽골간 1993-1995년도 문화협조계획서 조  
인
- 12.16 ○ 범민련 북측본부, 강령·규약 발표
  - 천도교 청우당 제6기 제22차 전원회의 및 조선천  
도교회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 12.17 ○ 당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12.18 ○ 잠비아 국방성 대표단, 평양 도착
- 12.19 ○ 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평  
남 군중대회 개최
- 12.20 ○ 김일성의 농업과학원 현지도 30돌 기념 보고회  
개최
- 12.21 ○ 미군측에 미군 유골 34구 인도
- 12.22 ○ 외교부 대변인, 조-미회담 관련 기자회견
  - 체신부, 모택동 생일 100돌 기념우표 및 우편엽서  
발행



- 『조국전선』·『조평통』 공동성명 발표
- 12.23 ○ 인민무력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돌 경축 기념보고회 개최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확대 전원회의 개최
- 12.24 ○ 부트로스 갈리 UN사무총장, 평양 도착
- 12.26 ○ 유엔 사무총장 방북 종료(12.24~26).
- 12.27 ○ 「전국 여맹일꾼들의 충성결의 모임」 진행(평양).
- 12.28 ○ 김일성의 「사회주의위업 계승 완성에 관한 이론사상」 연구 토론회 진행(12.15~28)
- 12.29 ○ 조평통서기국, 한국 문민정부 정책 비난 보도 발표
- 12.30 ○ 김일성-파키스탄 총리 베나지르 부토 「회담」 진행(평양).
- 12.31 ○ 설맞이 공연 진행(평양체육관)
  
- '94. 1. 1 ○ 김일성, '94신년사 발표
- 1. 2 ○ 김일성, 제정당·사회단체 책임일꾼들과 담화
  - 박성철 부주석, '94 김일성신년사 지지담화 발표
- 1. 3 ○ 인민군 대장 김리창 사망
- 1. 4 ○ 김병식 사민당 위원장, 김일성 신년사 지지담화 발표
- 1. 5 ○ 주러 북한대사관, 김일성 신년사 해설모임 개최
- 1. 6 ○ 『조국전선』 염태준 의장, 김일성 신년사 지지담화 발표
- 1. 7 ○ 이영덕 통일원장관의 1.5 기자간담회 내용 비난(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641호)
- 1. 8 ○ 정무원 부총리에 공진태 임명(중앙인민위 정령)

- 1.9 ○ 문화보존사, 화첩 『동명왕릉』제작
- 1.10 ○ 조총련 중앙열성자대회 개최
- 1.11 ○ 『범민련』 해외본부, 북측본부측에 '94년을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해』로 정하자는 제안서 전달(1.7)
  - 조선인민군 공군대표단(조명록 대장), 이란 향발
- 1.13 ○ 『직충』 중앙위 제27차 전원회의(1.12 ~ )
- 1.14 ○ 훈민정음 창제 55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 1.15 ○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중국 향발
  - 정관군 중국 공산당 서기 면담
- 1.16 ○ 황장엽, 주량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장 면담
- 1.17 ○ 황장엽, 강택민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면담
- 1.18 ○ 『전국 직맹 선전일꾼회의』 개최
- 1.19 ○ 김일성, 문익환목사 유가족들에 조건
  - 빈에서 IAEA측과 제4차 실무접촉
  - 황장엽, 광동성 주해경제특구 시찰(~1.21)
- 1.20 ○ 『여맹』 중앙위 19차 전원회의 개최(~1.21)
  -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 문익환목사 조의 방문단 파견 제의(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앞 전통문)
    - 장례대책위측에도 이를 통보(전통문)
- 1.21 ○ 외교부 대변인, 중앙통신과 IAEA의 전면사찰을 거부 회견
- 1.22 ○ 『조평통』·『범민련』 북측본부 공동주최 문익환목사 추도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개최
- 1.23 ○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일행, 중국

방문 마치고 귀환

- 주러 북한대사관, 김일성 신년사 해설모임 개최 (1.20)
- 1.24 ○ 이란과 외교여권 소지자들의 사증제도 폐지에 관한 합의서 조인
- 1.25 ○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총회 개최
- 1.26 ○ 미군 유골문제와 관련한 북·미 군사 실무그룹간 의견교환, 판문점에서 개최(~1.27)
- 1.27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평양 도착
  - 북한방송,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설립 비난 보도
- 1.28 ○ 중방,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계획 비난 보도
- 1.29 ○ 김일성, 미 빌리 그레이엄목사와 「면담」 진행.
- 1.30 ○ 조평통 대변인, 한국내 미정보지원팀·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비난 「성명」 발표.
- 1.31 ○ 외교부대변인, 美의 전면사찰 계속 요구시 NPT탈퇴유보결정 탈퇴 경고한 「성명」 발표
- 2. 1 ○ 외교부 대변인, 미 상원의 『자유아시아방송』 법안 통과 관련 중앙방송위 기자회견
  - 표류 북한병사 2명, 판문점 통해 귀환
- 2. 2 ○ 조선우표사, 김정일 생일 맞아 기념우표·우편엽서 등 발행
- 2. 3 ○ 김일성의 국내 당조직 및 혁명조직 대표들의 회의 60돌 기념 함경북도 보고회 개최
- 2. 4 ○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고속증식으로 접화계획 관련 담화 발표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동정

---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동정

- 통일교육전문위원 중앙협의회 이사회
  - 일 시 : '93.12.22
  - 장 소 : 통일연수원 강당
  - 안 건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93활동실적평가 및 '94사업계획 심의
  
- 우수통일교육전문위원 시상식
  - 일 시 : '93.12.23
  - 장 소 : 통일연수원 강당
  - 수상자 : 55명(정부포상 15명,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표창 40명)
  
- 통일교육전문위원 위촉('94.1.1) : 749명
  - 재 위 촉 : 686명
  - 신규위촉 : 63명
  
- 통일교육전문위원 연찬교육
  - 일 시 : '93. 3. 7- 4.27(2박 3일, 8회)
  - 장 소 : 통일연수원
  - 대 상 : 통일교육전문위원 720명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대의원 총회
  - 일 시 : '94. 3. 7
  - 장 소 : 통일연수원 교육관
  - 대 상 : '94사업계획 및 '93사업결산의 승인





- 시사자료 -

## 통일교육('94-1)

---

1994년 2월 일 인쇄

1994년 2월 일 발행

통 일 연 수 원

(전화 901-7173)

인 쇄 강 문 인 쇄 사

(전화 294-6651~3)

---

